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11. 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420호로 2024년 10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예비 창업자 및 중소 벤처기업의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나. 기존 입주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다. 시행규칙 내 운영위원회 규정을 조례로 이전(안 제6조의2~4)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주요 문장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단서 신설

라. 입법예고(2024. 9. 12.~10. 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규칙 내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의2(정의)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용어를 「중소기업기본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것을 적용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함.
- 안 제4조(입주대상 등)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려 함.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li><li>-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한 예비창업자</li><li>-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ul>

- 안 제6조제7항(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제6조의4(간사 및 서기)

까지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전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비문을 정비함.

○ 검토 결과

- 지난 '23년 1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 중 지자체 창업지원기관, 입주 대상 확대 권고<sup>1)</sup>에 관한 사항이 있음.

- 우리 구(區) 조례는 창업지원기관 입주대상을 「중소기업창업

1) 지자체 창업지원기관 입주대상 확대 권고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현황

[서울시 4개 자치구(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랑구) 권고사항 기반]

연번	지자체	조례명	입주대상
1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자 -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2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간에 관한 규정 없음
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간에 관한 규정 없음
4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자 - 새로이 설립하는 자
5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예비창업자
6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자 - 새로이 유망중소기업 설립하려는 자
7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자 -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지원법」에서 “창업기업”을 규정<sup>2)</sup>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보다 짧은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본 일부개정을 통해 입주대상을 확대하여 관내의 더 많은 초기 창업기업에 기회가 부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짐.

**※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시설현황**

- 위 치: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4층
- 면 적: 3,875.82㎡
- 주요시설

층별	구 분	면적(㎡)	주요기관 및 시설
계		3,875.82	3개 기관, 24개 기업, 청년 창업자 등
3층	지원기관 및 시설	1,937.91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구상공회, 협업지원센터 회의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4층	창업지원센터	1,937.91	입주기업 24개, 청년1인 창업지원실(5개), 창고

**※ 창업지원센터(4층) 운영현황**

(2024. 9. 기준)

구 분	운영현황			입주율	비 고
	계	입 주	공 실		
합 계	29	26	3		
창업지원센터	24	24	0	100%	
청년1인 창업지원실	5	2	3	40%	- 관리부서 변경 : 일자리정책과('24.8.~)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으로 본 조례 시행규칙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조례로 이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sup>3)</sup>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바 있기에 이를 따른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시행규칙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적기에 조례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추후 관련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으로 보여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3) 제7조(위원회의 설치 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참 고 자 료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다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업 연구소 또는 기업창업전담부서
-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 권부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11. 1.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421호로 2024년 10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조례 내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일본어투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일본어투 표현 “한한다” 및 띄어쓰기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2. 29. ~ 2024. 3. 27. / 27일 간):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호(정의)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된 바, 이를 반영하여 조문 내 세목 명을 정정함.
- 안 제3조제1항(선정)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조항이 제7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여 이를 적용해 조문 번호를 현행화함.
- 그 외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함.

### ○ 검토 결과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sup>1)</sup>」 제74조(정의)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된바, 이를 반영하고,

1) '20.12..29.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1.1.1. 시행된 바 있음.

개정 전		개정 후	
균 등 분	개 인	개 인	분
	개 인 사 업 자	사 업 소 분	
	법 인		
재 산	분		
종 업 원	분	종 업 원	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입법체계의 통일성 및 정합성 유지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등포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